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03
----------	-------

발의연월일 : 2026. 6. 5.

발 의 자 : 김주영 · 이학영 · 윤종균
김태선 · 소병훈 · 홍기원
박 정 · 장철민 · 문진석
박홍배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
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6항·제9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은 <u>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제4항은 <u>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p> <p>⑦·⑧ (생략)</p> <p>⑨ 제7항은 <u>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u>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p>	<p>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u>-----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u>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u>----- ----- -----.</p> <p>⑦·⑧ (현행과 같음)</p> <p>⑨ -----<u>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u>----- ----- -----.</p>